

[일련번호 : 27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동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등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7조(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의 발급 등)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[별지 제1호의 4서식]의 신청서와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.

「장애인복지 사업안내」 (보건복지부)에 따르면 대여·리스 차량의 경우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‘대여 및 리스차량 표지’를 발급하여야 하며, 읍·면·동장은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동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시 신청서 상 장애인 본인을 운전자로 기재하였음에도 시스템에 운전자를 본인이 아닌자를 입력하거나,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하였으며, 보행상 장애가 없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부적정 내역

연번	변경일자	장애인 본인	차량번호	표지유형	보행상 장애 여부	운전자	부적정 내역
1	230504			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	Y		운전자 입력 오류(신청서 상 운전자는 본인임)
2	230328			장애인본인용_주차가능	N		보행상장애 없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발급
3	230316			장애인보호자_주차가능	Y		운전자를 본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보호자용 표지 발급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